정 관

2015. 04. .

社團法人 壬辰亂精神文化宣揚會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정관

제정 2010. 9. .
개정 2011. 8. .
개정 2012. 6. .
개정 2014.12. .
개정 2015. 4.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의 분사무소는 다음 각 호에 둔다.
1. 충남분사무소 : 충남 아산시 온천동 1681 충무회관
2. 충북분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78-1 송상현충렬사
3. 광주광역시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4 충렬공기념사업회
4. 경북분사무소 :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흑암길 30-7가악재기념사업회
5. 대구광역시분사무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7길-38월곡역사박물관
6. 경남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7길-13, 201호 (무진드림빌딩)
7. 강원분사무소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77번지
8. 경기 · 인천분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송로2239번길 8-6
9. 전북분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한두평3길-14(중화산동2가)
10. 전남 · 제주분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팔마로 116-1 2층
11. 부산광역시분사무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온천천로79번길-22
12. 울산광역시분사무소 : 울산광역시 중구 서원11길-25(학성동) 울산 충의사

제3조(목적) 본회는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크게 위협당한 임진란의 위기 상황에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하였던 인물 등의 업적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여 위업을 추모하며, 관련 문화유산을 발굴·전승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정체성 확립과 정신문화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임진란 관련 지도자 등에 관한 문화유산 발굴·연구
2. 임진란 관련 학술 연구 및 회의 개최

3. 임진란 관련 전시회 등 문화예술사업 수행
4. 임진란 주갑(周甲) 관련 전통의전(傳統儀典) 봉행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② 개인회원은 본회 소속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회원서를 소속할 단체회원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당해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과 대의원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개인회원은 소속 단체회원을 통하여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이내(수석부회장 1인과 시(광역시) · 도 지회 회장이 포함 된다)
4. 이사 20인 이상 30인 이내(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5. 감사 2인
6. 운영위원 30인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명예 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부회장 중에서 선임하고,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④ 운영위원은 이사나 회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명예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륜에 기반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목적사업을 전담하며 본회의 실무를 총괄하여 집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지회 회장은 각 분소에 부여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운영위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재정문제 운영 전반에 기여한다.

제16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다음 각 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
2. 본회 소속의 각 단체회원 총회에서 선출한 당해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과 대의원

제18조(대의원의 정수 등)

① 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회원별 대의원의 정수는 당해 단체회원 소속 개인회원 20인당 1인으로 한다. 다만, 잔여 개인회원이 매 20인에 미달하는 때에는 11인 이상이면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② 각 단체회원은 선출된 대표자 1인과 대의원의 성명 등을 문서로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 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의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과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 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하거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수입금)
① 본회의 수입금은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본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수석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

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② 사무부서에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고문 추대 등)

① 본회는 단체회원의 원로인사를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며, 사회저명인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자문위원과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지명한다.

제40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u>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u>

제41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등기사항 제출)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0년 9월　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고, 그 임기는 부칙 제1조의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작한다.

제4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별지】

기 본 재 산 목 록

재산명	종 별 (소재지,지번,지목)	수 량 (지적:㎡)	단 가 (원)	금 액 (원)	취득원인	비 고
현금		1계좌		50,000,000	출연	
합 계		**1계좌**		**50,000,000**		